

# 김포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 3135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11. 17.  
제출자 김현주 의원

## 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 김현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개정이유

- 김포시의회 의원 수 증가 및 의회사무국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의 의안에 대한 검토가 증가됨에 더욱 합리적이고 실무에 맞는 입법 활동 및 회기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고문의 위촉(안 제3조) :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각각 3명 이내로 위촉 할 수 있다.

## 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김포시의회 의원 수 증가 및 의회사무국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각각 3명 이내로 위촉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